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 515

제출연월일 : 2024. 2. 8.

제 출 자 : 서구청장

1. 제안사유

○ 당초 보훈회관 건립을 리모델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, 리모델링 추진시 안전보강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며, 보훈단체 사무실이 협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축으로 건립방법을 변경하여 추진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개 요

O 위 치 : 국채보상로 187(평리동 1527-20번지)

O 대지면적 : 624.8m²(189평)

O 규 모: 연면적 990m²(300평) / 지하1층~지상4층

○ 사업기간 : 2024. 1. ~ 2025. 8.

O 사 업 비 : 9,200백만원

※ 사업부지 매입완료: 4,580백만원

나. 변경내역

O 총 괄

구 분	건립방법	규 모	사 업 비
변경 전	리모델링	지하1/지상3 (연면적 853.78㎡)	8,063백만원
변경 후	신 축	지하1/지상4 (연면적 990㎡)	9,200백만원

O 사업비 변경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총사업비	부지매입비	공사비	기타
변경 전	8,063	4,580	3,170	313
변경 후	9,200	4,580	4,000	620

O 층별배치(안)

구분	시설배치	면적	비고
계		990m²(300평)	
옥상	옥상정원		
	소회의실, 건강증진실, 화장실	250m²(76평)	
	사무실, 화장실	250m²(76평)	
 2층	사무실, 화장실	250m²(76평)	
 1층	사무실, 관리실, 장애인화장실	170㎡(51평)	
지하	기계실, 창고	70㎡(21평)	

O 재원계획

- 변경 전

(단위 : 백만원)

재원별	총사업비	기투자	2023년	2024년
계	8,063			8,063
구비	8,063			8,063

- 변경 후

(단위 : 백만원)

재원별	총사업비	기투자	2024년	2025년
계	9,200		9,200	
구비	9,200		9,200	준공

다. 대상지 현황

소재지	대지면적	건 물 연면적	지목	준공년도	비고
서구 평리동 1527-20번지	624.8 m²	853.78 m²	대	1994.10.27	매입완료

O 현장사진



라. 공유재산관리계획서(총괄표)

- 당초 계획

	(단위 : m²,백만원										<u>,백만원)</u>	
	구 분		2024 상반기			2024 하반기				합 계		
		토지	1	624.8	4,580				1	624.8	4,580	
	계	건물				1	853.78	3,170	1	853.78	3,170	
		기타										
		토지	1	624.8	4,580				1	624.8	4,580	
취 득	1.매입	건물										
•		기타										
		토지										
	2.기타, 취득	건물				1	853.78	3,170	1	853.78	3,170	
		기타										

※ 설계,감리비 등 제외 작성

- 변경 계획

(단위 : m²,백만원) 구 분 2024 상반기 2025 하반기 합계 토지 1 624.8 4,580 1 624.8 4,580 건물 1 계 1 990 4,000 990 4,000 기타 토지 1 624.8 4,580 1 624.8 4,580 1.매입 건물 기타 토지 2.기타, 건물 1 990 4,000 990 4,000 취득 기타

※ 설계,감리비 등 제외 작성

O 취득대상 재산목록

(단위 : m²,백만원)

	·								
일련번호		재산표시		기준 금액	추정 가액	취득 시기	취득 사유	소유자	비고
번 호 —	구 분	소재지	수량	금액	<u>가액</u>	시기	사유	一十十八	
	총 계			5,418	8,580				
1	토 지	평리동 1527-20	624.8	1,418 (공시지가)	4,580	2024. 1월	서구보훈 회관건립	비 콘 미디아 주식회사	매입 완료
2	건 물	평리동 1527-20	990	4,000 (공사비)	4,000	2025. 8월	서구보훈 회관건립		신축

※ 설계,감리비 등 제외 작성

3. 추진계획

-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: 2024. 1. ~ 2.

-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심의 : 2024. 2.

- 건축 설계공모 : 2024. 4. ~ 6.

- 실시설계 용역 : 2024. 6. ~ 10.

- 착공 및 준공 : 2024. 11. ~ 2025. 8.

[관련법령]

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공유 재산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 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②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, 시장・군수・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 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「지방자치법」제55조에 따른다.

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<u>법 제10조의2 제1항</u>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(이하 "공유재산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

- 1. 공유재산의 취득・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
- 2.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

■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

제5조(심의회의 심의사항)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사항
- 2. 법 제10조 및 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
- 3.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
- 4.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6.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
-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- 1.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ㆍ처분
- 2.「건축법」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・처분
- 3.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
- 4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

제12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공유재산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한다. 이 경우 공유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-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작성하며,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해야 한다. 다만, 공유임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해 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
- ④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"1건당 기준가격" 및 "1건당 기준면적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1건당 기준가격

가. 취득의 경우: 10억원 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

2. 1건당 기준면적

가. 취득의 경우: 1천제곱미터 나. 처분의 경우: 2천제곱미터